

부산지방법원 2021. 6. 16 선고 2020가단327634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 등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주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5. 12.

판 결 선 고 2021. 6. 1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8. 1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갑 제1, 2호증(가지번호 포함)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는 2018.경 피고로부터 좋은 부동산(사천시 C 답 664㎡ 및 D 과수원 979㎡, 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이 있으니 피고 및 피고의 언니인 E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자는 제의를 받고, 2018. 9.경부터 2019. 2.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 3,500원을 지급한 사실,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원고가 이를 매수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3,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,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,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. 8. 1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경수